

울산지방법원 2022. 11. 25 선고 2021가단3624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철

피 고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

담당변호사 김순득

변 론 종 결 2022. 9. 2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소외 E과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9. 18. 체결된 매매계약을 50,000,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E은 2019. 9. 18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37301호로 2019. 9. 1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그리고 E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F에게 매도하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37302호로 2019. 9. 1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다. F는 2020. 6. 12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00726호로 2020.

4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, 4, 1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E에 대하여 50,000,000원의 대여금 또는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, E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였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50,000,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0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 단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E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태홍

별지

(토지)

1.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 3562㎡ 중 5770분의 4884
2.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 200㎡
3.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양 1795㎡ 중 5770분의 4884

